

미래행복연금보험

고려생명보험주식회사

별첨 제 1 호

보험증권의 서식

미래 행복연금보험(개인계약)

보통보험약관

미래 행복연금보험(개인계약)보통보험약관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하며, 또한 보험계약일부터 생활연금 지급개시일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생활연금 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도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알림이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조 [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證明)하는 경우
- ④ 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⑤ 제1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이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가 있거나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의 장해상대가 되었을 경우 또는 제2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3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4조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 반환]

- ①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 5조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 의무]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약관의 전달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 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를 지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험금 수익자를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5호 내지 제9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 7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

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8조 [계약의 무효]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 9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 합니다.
1. 제1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 유족연금
2. 제1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암사망 유족연금
3. 제1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 및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 유족연금
4. 제1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애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애 상태가 되었을 때 : 장애급여금
5. 제2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생활연금
6. 피보험자가 행복축하금 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1종에 한함) : 행복축하금
7. 제2보험기간 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해외여행자금
8. 제2보험기간 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1종에 한함) : 레저생활연금

9. 제2보험기간 개시일부터 10년 경과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2중에 한함) : 장수축하연금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5호 내지 제9호의 경우 살아있을 때란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를 포함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⑥ 제1항 제4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제1보험기간 중에 두종목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⑦ 제6항에서 규정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⑧ 제6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7항 후단(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재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⑨ 회사는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4호의 장해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계약보험가입금액의 70% 해당액으로 합니다.

⑩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유족연금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금리차보장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금리차보장준비금 포함)을 매년 회사에서 정한 비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에 지급하거나 생활연금 지급개시 이후에 증액 연금등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애분류표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기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부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하며,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⑤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드립니다.

제15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동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8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까지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③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다시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20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8.5%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제2조(계약의 효력), 제4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1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피보험지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전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2조 [보험금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21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에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 ⑤ 회사는 생활연금, 행복축하금, 해외여행자금, 레저생활연금, 장수축하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 ⑥ 생활연금, 행복축하금, 해외여행자금, 레저생활연금, 장수축하연금, 제2회 이후의 제해사망유족연금, 암사망유족연금, 일반사망유족연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또는 수익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보험금등의 지급)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변경은 계약자의 사망, 파산, 이민 또는 이혼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시킬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2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제 2보험기간 개시전에 한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25조 [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서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26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27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8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1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 표)

=====
해약환급금 예시표
 =====

기준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가입연령: □ 60세형: 35세
 □ 65세형: 38세
 납입기간: 전기납(60세, 65세납)
 납입방법: 월납

[1 종]

구 분			경과기간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남	60세형	납입보험료	3,564	10,692	17,820	24,948	35,640	53,460
		해약환급금	0	6,269	13,887	21,857	34,300	60,985
자	65세형	납입보험료	3,492	10,476	17,460	24,444	34,920	52,380
		해약환급금	0	5,788	12,758	19,983	30,892	53,645
여	60세형	납입보험료	3,420	10,260	17,100	23,940	34,200	51,300
		해약환급금	0	6,433	14,319	22,796	36,366	66,144
자	65세형	납입보험료	3,120	9,360	15,600	21,840	31,200	46,800
		해약환급금	0	5,436	12,453	19,857	31,348	56,452

[2 종]

구 분			경과기간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남	60세형	납입보험료	3,360	10,080	16,800	23,520	33,600	50,400
		해약환급금	0	5,609	12,696	20,047	31,354	55,370
자	65세형	납입보험료	3,204	9,612	16,020	22,428	32,040	48,060
		해약환급금	0	4,869	11,097	17,451	26,752	45,668
여	60세형	납입보험료	3,300	9,900	16,500	23,100	33,000	49,500
		해약환급금	0	6,050	13,629	21,751	34,676	62,982
자	65세형	납입보험료	2,844	8,532	14,220	19,908	28,440	42,660
		해약환급금	0	4,553	10,861	17,443	27,436	49,109

(별 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 유족연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	제 1보험기간중 피보험 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1,0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암사망 유족연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	제 1보험기간중 피보험 자가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구분	경과기간	지급액
		단기납 및 전기납	2년미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25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2년이상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1,0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일시납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1,0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일반사망 유족연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3호)	제 1보험기간중 피보험 자가 제해 및 암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경과기간</th> <th>지 급 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단기납 및 전기납</td> <td>2년미만</td> <td>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25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td> </tr> <tr> <td>2년이상</td> <td>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5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td> </tr> <tr> <td>일시납</td> <td></td> <td>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5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td> </tr> </tbody> </table>	구 분	경과기간	지 급 액	단기납 및 전기납	2년미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25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2년이상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5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일시납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5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구 분	경과기간	지 급 액									
		단기납 및 전기납	2년미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25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2년이상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5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일시납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5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장 해 급 여 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4호)	제 1보험기간중 피보험 자가 제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	제2급 : 3,500만원 제3급 : 2,500만원 제4급 : 1,500만원 제5급 : 750만원 제6급 : 500만원											
생활연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5호)	제 2보험기간중 피보험 자가 매년 계약해당일 에 살아있을 때	매년 계약해당일에 500만원씩 중신지급(10차년도까지 보증지급)											
행복축하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1종에 한함)	행복축하금 지급해당일 (55,60,65세형 : 피보험 자연령 만 70,75,80세 계약해당일, 70세형 : 피보험자연령 75,80세 계약해당일)에 피보험 자가 살아있을 때	각 1,000만원씩 지급											

해외여행 자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	제 2보험기간 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700만원
레저생활 연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8호) (1종에 한함)	제 2보험기간 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매년 계약해당일에 200만원씩 10차년도까지 확정지급
장수축하 연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9호) (2종에 한함)	제 2보험기간 개시일로 부터 10년경과이후 피 보험자가 매년 계약해 당일에 살아있을 때	매년 계약해당일에 500만원씩 중신지급

주) 1. 제2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란 제1급의 장해상태를 포함합니다.

2. 생활연금, 레저생활연금 및 장수축하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월, 3개월, 6개월동안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3. 생활연금 및 레저생활연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개시후 10차년도 연금지급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10차년도까지의 잔여연금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 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 - 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 - 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V20 - 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전거의 탑승자	V30 - 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 - 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 - 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 - 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 - 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V80 - V89
10. 수상 운수사고	V90 - 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 - 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 - V99
13. 추락	W00 - W19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 - 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 W64
16. 불의의 익수	W65 - W74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 - W84
18. 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 - W99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 - 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 - X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	X20 - 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 - X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 - 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 - X59
25. 가해	X85 - 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 - 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 - 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 - 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 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 - 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 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 - Y84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다음사항은 제해관련금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중 처형 (Y35.5)

(별표 3)

장애등급분류표

등 급	신 체 장 해
제 1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두뇌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2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5.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 3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 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4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액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 4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5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 5 급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고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6 급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장애 등급 분류 해설 >

1. " 항상간호 "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 수시간호 "

" 수시간호 "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나. 정신장애로 인하여 자택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

음식물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활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 시력을 잃은 것 "

시력이 0.02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 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 시력의 뚜렷한 장애 "

시력이 0.06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 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

가. "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 (ㄱ, ㅋ, ㆁ), 치설음 (ㄴ, ㄷ, ㄹ), 구개음 (ㅈ, ㅊ), 후두음 (ㅇ, ㆁ)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상대 전부를 때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

불이나 유동식 (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애 "
- 가. "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나.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써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
-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 (청력검사단위) 로 했을 때 $1/6 (a+2b+2c+d)$ 의 값이 80 데시벨 (청력검사단위) 이상 (겉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 청력의 뚜렷한 장애 "
-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 데시벨 (청력검사단위) 이상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 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애 "
-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 (팔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 의 완전장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2. " 필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애 "
-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등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3. "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
- 가. " 척추의 뚜렷한 기형 "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의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 나. " 척추의 심한 운동장애 "
목뼈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
목뼈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 척추의 운동장애 "

목뼈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4. " 손가락의 장애 "

가. " 손가락을 잃은 것 "

첫째손가락은 지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첫째손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 마디)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첫째손가락은 지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 발가락의 장애 "

가. " 발가락을 잃은 것 "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 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첫째발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 마디)의 1/2 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첫째발가락은 지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 (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 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 (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 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애등급분류표중 제 1급의 5,6,7,8,9, 제 2급의 3,4,5 제 3급의 8 또는 제 4급의 12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별표 4)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제 1993-3호)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신생물	C43-C44
6. 종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3-C75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재불면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제 4 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미래행복연금보험(부부계약)

보통보험약관

미래 행복연금보험(부부계약)보통보험약관

제 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 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하며, 또한 보험계약일로부터 생활연금 지급개시일 전일까지를 "제1보험기간", 생활연금 지급개시일부터 종신까지를 "제2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도 있으며,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진단을 받지 아니 하는 계약(이하 "무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이하 "진단계약"이라 합니다)은 진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알림이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하고, 종피보험자의 범위는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이 계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후 제1항에 해당되는 종피보험자는 그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 ③ 보험기간중 종피보험자가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종피보험자가 사망[이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가 있거나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별표3에서 정하는 "장래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경우는 종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 3조 [계약의 효력]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이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책임개시일"이라 하며 책임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시에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책임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2. 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證明)하는 경우
- ④ 계약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⑤ 제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제2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가 모두 사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그때부터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4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등의 효력]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모집인등"이라 합니다)가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영업국, 영업소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서류, 사진, 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 포함)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5조 [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 반환]

- ①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항의 반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회사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 6조 [약관교부 및 중요한 내용의 설명 의무]

-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시까지 약관의 전달 및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것을 이유로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약관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 7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대표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 8조 [계약의 무효]

다음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제 9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제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 유족연금
 2. 제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암사망 유족연금
 3. 제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재해 및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 유족연금
 4. 제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여금
 5. 제2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생활연금
 6. 주피보험자가 행복축하금 지급해당일에 살아있을 때(1종에 한함) : 행복축하금
 7. 제2보험기간 개시일에 주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 해외여행자금
 8. 제2보험기간 개시일에 주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1종에 한함) : 레저생활연금

9. 제2보험기간 개시일부터 10년 경과이후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2종에 한함) : 장수축하연금

-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시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제5호 내지 제9호의 경우 살아있을 때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를 포함 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⑥ 제1항 제4호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제1보험기간 중에 두 종류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⑦ 제6항에서 규정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⑧ 제6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주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7항 후단(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1. 이 보험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 2. 제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의 지급 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⑨ 회사는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4호의 장해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계약 보험가입금액의 70% 해당액으로 합니다.

⑩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유족연금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⑪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 제1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된 후 제1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또다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 [배당금의 지급]

- ① 회사는 사업방법서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금리차보장준비금으로 적립합니

다.

- ② 회사는 "계약자배당준비금적립 및 배당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 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금리차보장준비금 포함)을 매년 회사에서 정한 비율로 부리하여 계약소멸시에 지급하거나 생활연금 지급개시 이후에 증액 연금등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 ① 회사는 다음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13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경제원 장관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리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가입자의 고지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고지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가니합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상 지났거나 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경우(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승낙거절 직업 또는 직종은 제외)
 5. 모집인들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③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청약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청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보험가입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가입한도액으로 감액하며, 그 초과가입액에 대한 보험료는 돌려드립니다.
- ⑤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금을 드립니다.

제15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상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실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는 납입기간중 계약자가 납입기일까지 납입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중 문서로 보험료의 납입방법,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회사는 그 방법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제17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통지]

수익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8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계약의 효력]

① 제2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기일로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하 "유예기간(猶豫期間)"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계약자가 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치 아니한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계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회사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유예기간이 끝나기 10일 이전까지 제1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③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수금불이행 또는 은행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약은 계속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다시 교부한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20조 [효력상실된 계약의 부활]

① 계약이 효력상실(效力喪失)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효력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할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에 8.5%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 승낙거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3항, 제3조(계약의 효력), 제5조(계약불성립시의 보험료의 반환) 및 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21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연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22조 [보험금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21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리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14조(가입자의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등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④ 이 약관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 ⑤ 회사는 생활연금, 행복축하금, 해외여행자금, 레저생활연금, 장수축하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드립니다.
- ⑥ 생활연금, 행복축하금, 해외여행자금, 레저생활연금, 장수축하연금, 제2회 이후의 재해사망 유족연금, 암사망 유족연금, 일반사망유족연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또는 수익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

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보험금등의 지급) 제4항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경우 보험금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변경은 계약자의 사망, 파산, 이민 또는 이혼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시킬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제24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제2보험기간 개시전에 한하여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장애분류표중 제1급의 장애상태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25조 [약관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서로 공제하는 방법으로 회수합니다.

③ 회사가 약관대출이자의 납입지연등을 이유로 약관대출 대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10일이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제26조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회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 및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3. 보험가입금액,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의 금액 및 지급사유

제27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28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보험감독원장에게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보험보증기금의 지급보장]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 아닌 계약에 대하여는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경우 보험보증기금이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1조 [준거법]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별 표)

=====
해약환급금 예시표
 =====

기준 { 보험가입금액:10만원
 납입기간: { 60세형:주피보험자 35세
 65세형:주피보험자 38세
 가입기간:전기납(60세,65세납)
 납입방법:월납
 주피보험자및 종피보험자 동시생존시

[1 종]

구 분		경과기간		1 년	3 년	5 년	7 년	10 년	15 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남 자	60 세 형	납입보험료		3,600	10,800	18,000	25,200	36,000	54,000
		해약환급금	0	6,299	13,932	21,916	34,380	61,047	
	65 세 형	납입보험료		3,552	10,656	17,760	24,864	35,520	53,280
		해약환급금	0	5,841	12,849	20,113	31,066	53,793	
여 자	60 세 형	납입보험료		3,600	10,800	18,000	25,200	36,000	54,000
		해약환급금	47	6,641	14,642	23,203	36,819	66,433	
	65 세 형	납입보험료		3,372	10,116	16,860	23,604	33,720	50,580
		해약환급금	0	5,725	12,906	20,436	32,030	57,040	

[2 종]

구 분		경과기간		1 년	3 년	5 년	7 년	10 년	15 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남 자	60 세 형	납입보험료		3,396	10,188	16,980	23,772	33,960	50,940
		해약환급금	0	5,638	12,739	20,101	31,428	55,428	
	65 세 형	납입보험료		3,264	9,792	16,320	22,848	32,640	48,960
		해약환급금	0	4,917	11,178	17,569	26,909	45,802	
여 자	60 세 형	납입보험료		3,468	10,404	17,340	24,276	34,680	52,020
		해약환급금	0	6,249	13,938	22,140	35,109	63,259	
	65 세 형	납입보험료		3,072	9,216	15,360	21,504	30,720	46,080
		해약환급금	0	4,816	11,265	17,958	28,044	49,632	

(별 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 유족연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1호)	제 1보험기간중 주피보 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1,0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암사망 유족연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2호)	제 1보험기간중 주피보 험자가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경과기간</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단기납 및 전기납</td> <td>2년미만</td> <td>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25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td> </tr> <tr> <td>2년이상</td> <td>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1,0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td> </tr> <tr> <td>일시납</td> <td></td> <td>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1,0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td> </tr> </tbody> </table>	구분	경과기간	지급액	단기납 및 전기납	2년미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25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2년이상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1,0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일시납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1,0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구분	경과기간	지급액											
단기납 및 전기납	2년미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25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2년이상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1,0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일시납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1,0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일반사망 유족연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3호)	제 1보험기간중 주피보 험자가 재해 및 암이외 의 원인으로 사망하거 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 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구 분	경과기간	지 급 액
		단기납 및 전기납	2년미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25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2년이상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5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일 시 납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5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장 해 급 여 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4호)	제 1보험기간중 주피보 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	제2급 : 3,500만원 제3급 : 2,500만원 제4급 : 1,500만원 제5급 : 750만원 제6급 : 500만원		
생활연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5호)	제 2보험기간중 주피보 험자가 매년 계약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매년 계약해당일에 500만원씩 중신지급(10차년도까지 보증지급)		
행복축하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1종에 한함)	행복축하금 지급해당일 (55,60,65세형 : 주피보 험자연령 만70,75,80세 계약해당일, 70세형 : 주피보험자연령 75,80 세 계약해당일)에 주피 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각 1,000만원씩 지급		

해외여행 자 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	제 2보험기간 개시일에 주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700만원
레저생활 연 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8호) (1종에 한함)	제 2보험기간 개시일에 주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	매년 계약해당일에 200만원씩 10차년도까지 확정지급
장수축하 연 금 (약관 제10조 제1항 제9호) (2종에 한함)	제 2보험기간 개시일로 부터 10년경과이후 주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매년 계약해당일에 500만원씩 중신지급

- 주) 1. 제2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배한 제1급의 장해상태를 포함합니다.
2. 생활연금, 레저생활연금 및 장수축하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월, 3개월, 6개월동안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3. 생활연금 및 레저생활연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개시후 10차년도 연금지급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10차년도까지의 잔여연금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동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 - 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 - 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 탑승자	V20 - 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 - 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 - 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 - 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 - 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 - 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V80 - V89
10. 수상 운수사고	V90 - 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 - 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 - V99
13. 추락	W00 - W19
14. 부상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 - 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 W64
16. 불의의 익수	W65 - W74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 - 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 - W99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 - 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 - X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	X20 - 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 - X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 - 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 - X59
25. 가해	X85 - 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 - 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 - 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 - 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 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 - 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 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 - Y84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다음사항은 재해관련급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I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중 처형 (Y35.5)

(별표 3)

장애등급분류표

등급	신체장애
제 1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2. 발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2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5.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 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 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 3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발의 3대 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4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 4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5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 5 급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6 급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장애 등급 분류 해설 >

1. " 항상간호 "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 수시간호 "

" 수시간호 "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나. 정신장애로 인하여 자택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

음식물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활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 시력을 잃은 것 "

시력이 0.02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 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 시력의 뚜렷한 장애 "

시력이 0.06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 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

가. "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 (ㄱ, ㄴ, ㄷ), 치설음 (ㄴ, ㄷ, ㄹ), 구개음 (ㅈ, ㅊ), 후두음 (ㅇ, ㅇ)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

불이나 유동식 (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애 "

가. "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써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 (청력검사단위) 로 했을 때 $1/6 (a+2b+2c+d)$ 의 값이 80 데시벨 (청력검사 단위)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 청력의 뚜렷한 장애 "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 데시벨 (청력검사단위) 이상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 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애 "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 (팔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2. "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애 "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등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3. "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

가. " 척추의 뚜렷한 기형 "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 척추의 심한 운동장애 "
목뼈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
목뼈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라. " 척추의 운동장애 "
-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4. " 손가락의 장애 "

- 가. " 손가락을 잃은 것 "
-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 나. "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첫째손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 마디)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 발가락의 장애 "

- 가. " 발가락을 잃은 것 "
-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 나. "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 첫째발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 마디)의 1/2 이상, 그외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첫째발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신체의 동일부위

-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 (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 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 (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 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 마. 장애등급분류표중 제 1급의 5,6,7,8,9, 제 2급의 3,4,5 제 3급의 8 또는 제 4급의 12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별표 4)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제 1993-3호)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악성신생물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신생물	C43-C44
6. 증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3-C75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제 4 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배우자연금특약약관

배우자연급특약 약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주계약 해지(解止)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보험기간중 종피보험자가 사망[이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가 있거나 별표2(제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제해(이하 "제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장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하였거나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또는 제2보험기간중 종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4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주계약에 정한 종피보험자(이하 "종피보험자"라 합니다)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제1보험기간중 종피보험자가 제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유족연금
 2. 제1보험기간중 종피보험자가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암사망유족연금
 3. 제1보험기간중 종피보험자가 제해 및 암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유족연금
 4. 제1보험기간중 종피보험자가 제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장해급여금
 5. 제2보험기간 개시일 또는 제2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10년경과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종피보험자만 살아있을 때 : 생활연금

6. 행복축하금 지급해당일에 종피보험자만 살아있을 때 (1종에 한함)
: 행복축하금

7. 제2보험기간 개시일에 종피보험자만 살아있을 때 : 해외여행자금

8. 제2보험기간 개시일에 종피보험자만 살아있을 때 (1종에 한함)
: 레지생활연금

9. 제2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10년 경과 이후 종피보험자만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2종에 한함) : 장수축하연금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제5호 내지 제9호의 경우 살아있을 때만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를 포함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종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⑥ 제1항 제4호의 경우 종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제1보험기간 중에 두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⑦ 제6항에서 규정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재해로 인하여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⑧ 제6항에 있어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종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7항 후단(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⑨ 회사는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4호의 장해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특약보험가입금액의 70% 해당액으로 합니다.

⑩ 회사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우존연금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신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디아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디아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6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7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보험증권
 - 4. 종피보험자의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 5.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6.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 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8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을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리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④ 회사는 생활연금, 행복축하금, 해외여행자금, 레저생활연금, 장수축하연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알려 드립니다.

⑤ 생활연금, 행복축하금, 해외여행자금, 레저생활연금, 장수축하연금, 제2회 이후의 재해사망유족연금, 암사망유족연금, 일반사망유족연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9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려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제2보험기간 개시전에 한하여 종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1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에 따릅니다.

(별 표)

=====
해약환급금 예시표
 =====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만원
 가입연령: { 60세형: 주피보험자 35세
 65세형: 주피보험자 38세
 납입기간: 전기납(60세, 65세납)
 납입방법: 월납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동시생존시

[1 중]

구 분		경과기간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남 자	60 세 형	납입보험료		1,356	4,068	6,780	9,492	13,560	20,340
		해약환급금		182	2,674	5,556	8,571	13,127	21,338
	65 세 형	납입보험료		1,560	4,680	7,800	10,920	15,600	23,400
		해약환급금		364	3,232	6,519	9,956	15,140	24,451
여 자	60 세 형	납입보험료		1,740	5,220	8,700	12,180	17,400	26,100
		해약환급금		385	3,121	5,960	8,724	12,354	17,209
	65 세 형	납입보험료		2,292	6,676	11,460	16,044	22,920	34,380
		해약환급금		791	4,357	8,004	11,585	16,461	23,670

[2 중]

구 분		경과기간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납입보험료	해약환급금						
남 자	60 세 형	납입보험료		1,500	4,500	7,500	10,500	15,000	22,500
		해약환급금		331	3,157	6,431	9,908	15,324	25,638
	65 세 형	납입보험료		1,584	4,752	7,920	11,088	15,840	23,760
		해약환급금		390	3,321	6,693	10,245	15,689	25,865
여 자	60 세 형	납입보험료		1,752	5,256	8,760	12,264	17,520	26,280
		해약환급금		396	3,156	6,026	8,829	12,543	17,671
	65 세 형	납입보험료		2,268	6,804	11,340	15,876	22,680	34,020
		해약환급금		766	4,279	7,867	11,384	16,163	23,235

(별 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5,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사망 유족연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제 1보험기간중 종피보 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1,0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암사망 유족연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	제 1보험기간중 종피보 험자가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경과기간</th> <th>지급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단기납 및 전기납</td> <td>2년미만</td> <td>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25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td> </tr> <tr> <td>2년이상</td> <td>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1,0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td> </tr> <tr> <td>일시납</td> <td></td> <td>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1,0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td> </tr> </tbody> </table>	구분	경과기간	지급액	단기납 및 전기납	2년미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25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2년이상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1,0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일시납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1,0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구분	경과기간	지급액											
단기납 및 전기납	2년미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25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2년이상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1,0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일시납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1,0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일반사망 유족연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3호)	제 1보험기간중 종피보험 자가 제해 및 암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구 분 경과기간 지 급 액	
		단기납 및 전기납	2년미만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25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2년이상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5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일 시 납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500만원씩 20년간 확정지급	
장 해 급 여 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4호)	제 1보험기간중 종피보험 자가 제해로 인하여 장해 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제2급 : 3,500만원 제3급 : 2,500만원 제4급 : 1,500만원 제5급 : 750만원 제6급 : 500만원	
생활연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5호)	제 2보험기간개시일에 또 는 제 2보험기간개시일로 부터 10년경과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 만 살아있을 때	매년 계약해당일에 500만원씩 중선지급(10차년도까지 보증지급)	
행복축하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6호) (1종에 한함)	행복축하금 지급해당일(55 ,60,65세형:주피보험자 연 령 만70,75,80세 계약해당 일, 70세형:주피보험자 연 령 75,80세 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만 살아있을 때	각 1,000만원씩 지급	

해외여행 자 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7호)	제 2보험기간 개시일에 중피보험자만 살아있을 때	700만원
레저생활 연 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8호) (1종에 한함)	제 2보험기간 개시일에 중피보험자만 살아있을 때	매년 계약해당일에 200만원씩 10차년도까지 확정지급
장수축하 연 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9호) (2종에 한함)	제 2보험기간 개시일로 부터 10년경과이후 중 피보험자만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매년 계약해당일에 500만원씩 중신지급

- 주) 1. 제2보험기간중 중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란 제1급의 장해상태를 포함합니다.
2. 생활연금, 레저생활연금 및 장수축하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월, 3개월, 6개월동안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3. 생활연금 및 레저생활연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제2보험기간 개시후 10차년도 연금지급 이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10차년도까지의 잔여연금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별표 2)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 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시행)중 "질병이유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 - 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 - 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 탑승자	V20 - 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전거의 탑승자	V30 - 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 - 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 - 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 - 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 - 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V80 - V89
10. 수상 운수사고	V90 - 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 - 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 - V99
13. 추락	W00 - W19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 - 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 W64
16. 불의의 익수	W65 - W74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 - 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 - W99
19. 연기, 분 및 화염에 노출	X00 - 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 - X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	X20 - 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 - X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 - 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 - X59
25. 가해	X85 - 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 - 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 - 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재 및 생물학 물질	Y40 - 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 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 - 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 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 - Y84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다음사항은 재해관련급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의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중 처형 (Y35.5)

(별표 3)

장애등급 분류표

등급	신체장애
제 1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2. 말 또는 씹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4. 흉복부, 상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2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5.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 3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 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4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계 4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계 5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발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 5 급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6 급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장애등급분류해설 >

1. " 항상간호 "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 수시간호 "

" 수시간호 "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나. 정신장애로 인하여 자택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

음식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활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 시력을 잃은 것 "

시력이 0.02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 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 시력의 뚜렷한 장애 "

시력이 0.06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 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

가. "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 (ㄱ, ㅋ, ㆁ), 치설음 (ㄴ, ㄷ, ㄹ), 구개음 (ㅈ, ㅊ), 후두음 (ㅇ, ㆁ)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

물이나 유동식 (비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애 "

가. "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써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 (청력검사단위) 로 했을 때 $1/6 \cdot (a+2b+2c+d)$ 의 값이 80 데시벨 (청력검사단위)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 청력의 뚜렷한 장애 "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 데시벨 (청력검사단위) 이상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 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애 "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 (팔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장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2. "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애 "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등도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3. "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

가. " 척추의 뚜렷한 기형 "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나. " 척추의 심한 운동장애 "
목뼈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 "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
목뼈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 척추의 운동장애 "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4. " 손가락의 장애 "

가. " 손가락을 잃은 것 "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첫째손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 마디)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 발가락의 장애 "

가. " 발가락을 잃은 것 "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 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첫째발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 마디)의 1/2 이상, 그의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첫째발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 (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 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 (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 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애등급분류표중 제 1급의 5,6,7,8,9, 제 2급의 3,4,5 제 3급의 8 또는 제 4급의 12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별표 4)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제 1993-3호)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 악성신생물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신생물	C43-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오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3-C75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제 4 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후일교통재해보장특약약관

휴일교통재해보장특약약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개인계약, 부부계약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주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특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부부계약의 경우 이 특약의 주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하며 종피보험자는 제2항에 정한 자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종피보험자는 제1항에 정한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 ③ 종피보험자의 자격획득 및 상실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합니다)에 별표4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교통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이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失蹤宣告)가 있거나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교통재해사망유족연금
 2.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 주계약의 약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장해상태의 등급이 교통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교통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교통재해로 인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⑤ 제1항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에 두중복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만을 드립니다.

⑥ 제5항에서 규정한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교통재해로 인하여 2회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한 장해에 해당하는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드립니다.

⑦ 제5항에 있어서 그 교통재해진역 이미 다음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6항 후단(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⑧ 회사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의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특약보험가입금액의 70% 해당액으로 합니다.

⑨ 회사는 제1항 제1호의 휴일교통재해사담유족연금을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 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까지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5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 1항 및 제 2항의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6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7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 8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7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④ 제2회 이후의 휴일교통재해사망유족연금 및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 9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려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채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0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에서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1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에 따릅니다.

(별 표)

=====
계약환급금 예시표
 =====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1,000만원
 가입연령: [60세만기:주피보험자 35세
 65세만기:주피보험자 38세
 납입기간:전기납
 납입방법:월납

[개인계약]

구분		경과기간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남 자	60 세 만기	납입보험료	108	324	540	756	1,080	1,620
		계약환급금	0	0	88	111	100	78
	65 세 만기	납입보험료	108	324	540	756	1,080	1,620
		계약환급금	0	0	26	56	56	57
여 자	60 세 만기	납입보험료	36	108	180	252	360	540
		계약환급금	0	0	31	57	50	39
	65 세 만기	납입보험료	36	108	180	252	360	540
		계약환급금	0	0	13	48	58	91

[부부계약]

구분		경과기간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남 자	60 세 만기	납입보험료	132	396	660	924	1,320	1,980
		계약환급금	0	21	135	182	180	137
	65 세 만기	납입보험료	144	432	720	1,008	1,440	2,160
		계약환급금	0	28	100	132	134	135
여 자	60 세 만기	납입보험료	144	432	720	1,008	1,440	2,160
		계약환급금	0	22	90	117	109	91
	65 세 만기	납입보험료	156	468	780	1,092	1,560	2,340
		계약환급금	0	0	33	74	95	144

※ 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동시 생존시 금액임.

(별 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여명칭	지급사유	지급내용	
		개인계약	부부계약
휴일교통재해 사망유족연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1호)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토요일 또는 공 휴일에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 망하거나 장애분류표중 제1급 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주피보험자 : 매년 500만원 씩 20회 확정 지급	○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 각각 매년 500만원씩 20회 확정 지급
휴일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약관 제3조 제1항 제2호)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토요일 또는 공 휴일에 교통재해로 인하여 장 해분류표중 제2급 내지 제6급 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 주피보험자 2급:700만원 3급:500만원 4급:300만원 5급:150만원 6급:100만원	○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각각 2급:700만원 3급:500만원 4급:300만원 5급:150만원 6급:100만원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 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 - 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 - 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 탑승자	V20 - 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의 탑승자	V30 - 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 - 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 - 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 - 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 - 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V80 - V89
10. 수상 운수사고	V90 - 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 - 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 - V99
13. 추락	W00 - W19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 - 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 W64
16. 불의의 익수	W65 - W74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 - 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 - W99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 - 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 - X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	X20 - 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 - X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 - 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 - X59
25. 가해	X85 - 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 - 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 - 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 - 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 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비에 의한 부작용	Y70 - 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 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 - Y84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다음사항은 제해관련급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중 처형 (Y35.5)

(별표 3)

장해등급분류표

등급	신체장애
제 1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두눈의 시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 2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5.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 3급의 2부터 7까지중 또는 제 4급의 5부터 11까지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되었을 때6. 두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 3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 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4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적어도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 4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5 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등 급	신 체 장 해
제 5 급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고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제 6 급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 장애 등급 분류 해설 >

1. " 항상간호 "

항상 타인의 간호 없이는 생명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고도의 치매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 수시간호 "

" 수시간호 "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수시로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경우

나. 정신장애로 인하여 자택밖의 행동이 곤란하여 수시로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3. "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

음식물섭취, 배변·배뇨, 거동·보행 또는 목욕등을 하는데 있어 평생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 또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생활적응능력이 떨어져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심한 불편을 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 시력을 잃은 것 "

시력이 0.02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 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5. " 시력의 뚜렷한 장애 "

시력이 0.06 이하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따라 한눈씩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함) 로 되어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6.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

가. " 말의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은 것 "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말과 소리내는 기능장애로서 구순음 (口, ㅁ, ㅍ), 치설음 (ㄴ, ㄷ, ㄹ), 구개음 (ㅅ, ㅆ), 후두음 (ㅇ, ㅎ) 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2) 뇌언어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서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

물이나 유동식 (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7. "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애 "
- 가. "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나. "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
-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 (청력검사단위) 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 데시벨 (청력검사단위) 이상 (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 청력의 뚜렷한 장애 "
-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 데시벨 (청력검사단위) 이상 (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 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애 "
- 코뼈가 결손된 경우로서 양코로 숨쉬는 것이 곤란하거나 또는 후각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 (팔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 의 완전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2. "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애 "
-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가능 영역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보행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3. "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장애 "
- 가. " 척추의 뚜렷한 기형 "
통상의 의복을 착용하여도 외부로부터 보아서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 이상의 것을 말한다.
- 나. " 척추의 심한 운동장애 "
목뼈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 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애 "
목뼈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라. " 척추의 운동장애 "
목뼈 또는 가슴등뼈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 굽히기 및 좌우 회전운동중 2종류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3/4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14. " 손가락의 장애 "

가. " 손가락을 잃은 것 "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손가락의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첫째손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 마디)의 1/2]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손가락의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5. " 발가락의 장애 "

가. " 발가락을 잃은 것 "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 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
첫째발가락은 말절골(끝에서 첫째 마디)의 1/2 이상, 그의 발가락은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이상을 잃은 경우거나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 마디)[첫째발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이 완전강직되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신체의 동일부위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이하 (손가락, 손목이하, 팔꿈치이하, 어깨이하) 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이하 (발가락, 발목이하, 무릎이하, 골반이하) 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라 한다.

마. 장애등급분류표중 제 1급의 5,6,7,8,9, 제 2급의 3,4,5 제 3급의 8 또는 제 4급의 12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부위라 한다.

(별표 4)

교통재해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 다. 도로 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피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 부더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재해
2. 제 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것을 말합니다.
 -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 (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에레베이터 및 에스카레이타 등
 -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 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재해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 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 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부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부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도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장기입원생활보장특약약관

장기입원생활보장특약약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개인계약, 부부계약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주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부부계약의 경우 이 특약의 주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하며 종피보험자는 제2항에 정한 자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종피보험자는 제1항에 정한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 ③ 종피보험자의 자격획득 및 상실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별표3(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31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하였을 때 : 장기입원급여금
 2.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31일, 121일, 181일째 계속 입원하고 있을 때 :
소득보장급여금
-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 주계약의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의 제1호의 경우 피보험자에 대한 장기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하며, 제1항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에 대한 소득보장급여금의 지급을 위한 계속입원일수는 1회 입원당 181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④ 제2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서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고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장기입원급여금 및 소득보장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게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장기입원급여금 및 소득보장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제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 4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 3조 제 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이하 한의원은 제외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입원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급여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정신장애(심신상실, 심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5.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6.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7. 치아의 보철에 의해서 입원한 경우
8.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9.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치료,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로 인하여 입원하는 경우
10. 미용상 또는 무통분만(無痛分娩)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의한 제왕절개수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급여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④ 제1항 제4호 내지 제10호의 경우에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나, 특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제 6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 1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8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9조 [보험금 등 청구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병원 또는 의원의 입원증명서
 - 3. 보험증권
 -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5. 기타, 수익자가 급여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입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

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급여금의 경우 자금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내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 ④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 1%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에서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3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에 따릅니다.

(별 표)

=====
해약환급금 예시표
 =====

기준 [보험가입금액 : 10만원
 가입연령 : 60세 만기: 주피보험자 35세
 65세 만기: 주피보험자 38세
 납입기간 : 전기납
 납입방법 : 월납

[개인계약]

구분			경과기간					
구분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남 자	60 세 만기	납입보험료	612	1,836	3,060	4,284	6,120	9,180
		해약환급금	0	281	918	1,450	1,916	2,301
	65 세 만기	납입보험료	720	2,160	3,600	5,040	7,200	10,800
		해약환급금	0	479	1,203	1,823	2,456	3,196
여 자	60 세 만기	납입보험료	612	1,836	3,060	4,284	6,120	9,180
		해약환급금	0	299	948	1,492	1,971	2,356
	65 세 만기	납입보험료	732	2,196	3,660	5,124	7,320	10,980
		해약환급금	0	519	1,271	1,918	2,588	3,358

[부부계약]

구분			경과기간					
구분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남 자	60 세 만기	납입보험료	1,128	3,384	5,640	7,896	11,280	16,920
		해약환급금	0	859	1,873	2,775	3,726	4,450
	65 세 만기	납입보험료	1,356	4,068	6,780	9,492	13,560	20,340
		해약환급금	79	1,250	2,502	3,610	4,847	6,166
여 자	60 세 만기	납입보험료	1,320	3,960	6,600	9,240	13,200	19,800
		해약환급금	38	1,116	2,261	3,245	4,261	5,079
	65 세 만기	납입보험료	1,608	4,824	8,040	11,256	16,080	24,120
		해약환급금	185	1,541	2,936	4,187	5,674	7,399

※ 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동시생존시 금액임.

(별 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금 부 명	지 급 사 유	지 급 사 유	
		개 인 계 약	부 부 계 약
장기입원 급여금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중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31일이상 계속입원시	㉠ 주피보험자 : 30일초과 1일당 2만원	㉠ 주피보험자 및 중피보험자 : 각 30일초과 1일당 2만원
소득보장 급여금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중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로 31일, 121일, 181일 계속입원시	㉠ 개인계약 : 주피보험자	
		계속입원일수	지 급 액
		31일	50만원
		121일	100만원
		181일	200만원
		㉠ 부부계약 : 주피보험자 및 중피보험자 각각	
		계속입원일수	지 급 액
		31일	50만원
121일	100만원		
181일	200만원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 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 - 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 - 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 탑승자	V20 - 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 - 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 - 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 - 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 - 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 - 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V80 - V89
10. 수상 운수사고	V90 - 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 - 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 - V99
13. 추락	W00 - W19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 - 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 W64
16. 불의의 익수	W65 - W74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 - 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 - W99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 - 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 - X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	X20 - 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 - X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 - 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 - X59
25. 가해	X85 - 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 - 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 - 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 - 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 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 - 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 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 - Y84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다음사항은 재해관련급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의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인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중 처형 (Y35.5)

(별표 3)

질병 및 재해분류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 류 항 목	국제기본분류
I.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A00 - B99
II. 신생물	C00 - D48
III.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D50 - D89
IV.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E00 - E90
VI. 신경계의 질환	G00 - G99
VII. 눈 및 눈부속기의 질환	H00 - H59
VIII.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H60 - H95
IX. 순환기계체의 질환	I00 - I99
X. 호흡기계체의 질환	J00 - J99
XI. 소화기계체의 질환	K00 - K93
XII.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L00 - L99
XII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 - M99
XIV. 비뇨생식기계체의 질환	N00 - N99
XV. 임신, 출산 및 산욕	O00 - O99
XVI.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P00 - P96
XVIII.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00 - R99
XIX.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 - T98
XX.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V01 - Y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제에 의한 사고 	

주) 다음 사항은 급여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1. 정신장해(심신상실, 심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2.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의보철과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도-크 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암 치료 생활보장 특약약관

암 치료 생활 보장 특약 약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개인계약, 부부계약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에서 정한 보험계약일(이하 "계약일"이라 합니다)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부부계약의 경우 계약일의 다음날 이후에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의 규정에 따라 종피보험자가 된 자에 대하여는 종피보험자로 된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책임개시일로 하여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③ 주계약이 해지(解止) 및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부부계약의 경우 이 특약의 주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하며 종피보험자는 제2항에 정한 자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종피보험자는 제1항에 정한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 ③ 종피보험자의 자격획득 및 상실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3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 "악성신생물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와 별표2의 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그 증상이 미미한 기저세포신생물 및 편평상피신생물(basal cell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자격증을 가진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 또는 혈액검사(hemic system)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암에 대한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 4조 [특약의 무효]

- 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를 피보험자로 한 경우
 - 2.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3. 피보험자가 계약일로부터 과거 5년이내 또는 계약일로부터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모르고 있었거나를 묻지 아니합니다)
- ② 제1항 제3호의 경우 계약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확정된 사실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고있는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5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 암치료생활자금
 - 2.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암수술생활자금
-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 주계약의 약관에서 강한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제 6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7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 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8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1조(특약의 체결 및 효력) 제2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9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암진단확인서, 암수술확인서)
 - 3. 보험증권
 -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③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에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 ④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려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본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에서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3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 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기준 보험가입금액 : 10만원
 가입연령 : 60세 만기: 주피보험자 35세
 65세 만기: 주피보험자 38세
 납입기간 : 전기납
 납입방법 : 월납

[개인계약]

구분		경과기간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남 자	60 세 만기	납입보험료	396	1,188	1,980	2,772	3,960	5,940
		해약환급금	132	805	1,535	2,236	3,147	4,197
	65 세 만기	납입보험료	564	1,692	2,820	3,948	5,640	8,460
		해약환급금	272	1,180	2,164	3,112	4,407	6,032
여 자	60 세 만기	납입보험료	312	936	1,560	2,184	3,120	4,680
		해약환급금	3	344	728	1,084	1,482	1,767
	65 세 만기	납입보험료	396	1,188	1,980	2,772	3,960	5,940
		해약환급금	57	499	999	1,440	1,917	2,445

[부부계약]

구분		경과기간	1년	3년	5년	7년	10년	15년
남 자	60 세 만기	납입보험료	648	1,944	3,240	4,536	6,480	9,720
		해약환급금	290	1,223	2,206	3,153	4,405	5,759
	65 세 만기	납입보험료	900	2,700	4,500	6,300	9,000	13,500
		해약환급금	480	1,742	3,083	4,388	6,168	8,220
여 자	60 세 만기	납입보험료	852	2,556	4,260	5,964	8,520	12,780
		해약환급금	435	1,595	2,818	3,986	5,517	6,994
	65 세 만기	납입보험료	1,176	3,528	5,880	8,232	11,760	17,640
		해약환급금	645	2,198	3,805	5,352	7,327	9,519

※ 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동시 생존시 금액임

(별 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개인계약	부부계약
암치료 생활자금 (약관제5조 제1항 제1호)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중피보험자가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주피보험자 : 1,000만원 (1회에 한함)	◎주피보험자 : 1,000만원 ◎중피보험자 : 1,000만원 (피보험자별 1회에 한함)
암수술 생활자금 (약관제5조 제1항 제2호)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중피보험자가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주피보험자 (수술1회당) : 200만원	◎주피보험자 (수술1회당) : 200만원 ◎중피보험자 (수술1회당) : 200만원

(별표 2)

악성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3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제 1993-3호)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 흑색종 및 피부의 기타 악성신생물	C43-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3-C75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제 4 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 원 특 약 약 관

입원특약약관

제 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개인계약, 부부계약중 선택하여 청약(請約)하고 보험회사가 승낙(承諾)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주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특실]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의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부부계약의 경우 이 특약의 주피보험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하며 종피보험자는 제2항에 정한 자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종피보험자는 제1항에 정한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 ③ 종피보험자의 자격획득 및 상실은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 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중 별표3(질병 및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 (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하여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할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입원급여금(별표1 "보험금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료 납입기간중 주계약의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이후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의 경우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④ 제3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4일이상의 입원을 2회이상 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며, 각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⑤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속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⑥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약이 유효한 기간중에 피보험자에게 별표2(재해분

류표)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고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재해로 인하여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 4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이하 한의원은 제외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입원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입원급여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잔액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정신장애(심신상실, 심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5.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6. 비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7. 치아의 보철에 의해서 입원한 경우

8.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9.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치료,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로 인하여 입원하는 경우

10. 미용상 또는 무통분만(無痛分娩)등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의한 제왕절개수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입원급여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④ 제1항 제4호 내지 제10호의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나, 특약은 계속 유효합니다.

제 6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제1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 7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효력]

-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주계약이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유예기간(猶豫期間)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은 더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제 8조 [효력상실된 특약의 부활]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제 9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병원 또는 의원의 입원증명서
 3. 보험증권
 4. 주민등록증 제시(본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5. 기타, 수익자가 입원급여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입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

-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

금을 드립니다. 다만, 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내에 입원급여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의 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에 의한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별표 "해약환급금 예시표" 참조)

④ 해약환급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 + 1%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11조 [특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려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1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에서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13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에 따릅니다.

(별 표)

=====
혜 약 환 금 금 예 시 표
 =====

기준 { 보험가입금액 : 10만원
 기 입 연 령 : { 60세 만기: 주피보험자 35세
 65세 만기: 주피보험자 38세
 납입기간 : 전기납
 납입방 법 : 월납

[개인계약]

구 분		경과기간	1 년	3 년	5 년	7 년	10 년	15 년
남 자	60 세 만기	납입보험료	312	936	1,560	2,184	3,120	4,680
		혜약환급금	0	103	364	584	780	939
	65 세 만기	납입보험료	360	1,080	1,800	2,520	3,600	5,400
		혜약환급금	0	203	500	754	1,013	1,311
여 자	60 세 만기	납입보험료	312	936	1,560	2,184	3,120	4,680
		혜약환급금	0	110	376	602	802	961
	65 세 만기	납입보험료	360	1,080	1,800	2,520	3,600	5,400
		혜약환급금	0	219	528	793	1,068	1,378

[부부계약]

구 분		경과기간	1 년	3 년	5 년	7 년	10 년	15 년
남 자	60 세 만기	납입보험료	600	1,800	3,000	4,200	6,000	9,000
		혜약환급금	0	310	717	1,090	1,495	1,803
	65 세 만기	납입보험료	696	2,088	3,480	4,872	6,960	10,440
		혜약환급금	31	510	1,030	1,491	2,006	2,539
여 자	60 세 만기	납입보험료	672	2,016	3,360	4,704	6,720	10,080
		혜약환급금	13	453	929	1,339	1,761	2,088
	65 세 만기	납입보험료	792	2,376	3,960	5,544	7,920	11,880
		혜약환급금	84	651	1,230	1,746	2,355	3,048

※ 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동시 생존시 금액임

(별 표 1)

보험금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입원 급여금	보험기간중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 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 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 하였을 때	o 개인계약 주피보험자 : 3일 초과 1일당 1만원 o 부부계약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 : 각 3일 초과 1일당 1만원

(별표 2)

재 해 분 류 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 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 - 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 - 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V20 - 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 - 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 - 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 - 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 - 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 - 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V80 - V89
10. 수상 운수사고	V90 - 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V95 - V97
1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사고	V98 - V99
13. 추락	W00 - W19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 - 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 W64
16. 불의의 익수	W65 - W74

분 류 항 목	분 류 번 호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 - W84
18. 천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 - W99
19.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 - 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 - X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의 접촉	X20 - 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 - X39
23.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 - 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 - X59
25. 가해	X85 - 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 - 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 - 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 - Y59
29. 의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 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 - 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 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의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 - Y84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한 질병	

* 다음사항은 재해관련급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의용약 또는 약물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 (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의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중 처형 (Y35.5)

(별표 3)

질병 및 장애분류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분 류 항 목	국제기본분류
I.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A00 - B99
II. 신생물	C00 - D48
III.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 장애	D50 - D89
IV.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E00 - E90
VI. 신경계의 질환	G00 - G99
VII.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H00 - H59
VIII.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H60 - H95
IX. 순환기계의 질환	I00 - I99
X. 호흡기계의 질환	J00 - J99
XI. 소화기계의 질환	K00 - K93
XII.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L00 - L99
XII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 - M99
XIV.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N00 - N99
XV. 임신, 출산 및 산욕	O00 - O99
XVI.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P00 - P96
XVII.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00 - R99
XIX.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 - T98
XX.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V01 - Y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종에 규정된 질병 ·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제재에 의한 사고 	

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1. 정신장애(심신상실, 심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2.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의보철과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도-크 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